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 관련 보고

2020, 5, 14,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l. 보고 배경
- Ⅱ. 현행 판결서 공개방식(3가지) 요약
- 1. 확정 판결서 인터넷 열람
- 2. 전자우편 예규에 따른 판결서사본 제공
- 3.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방문열람
- Ⅲ.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여부 및 관련 문제
- 1. 미확정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에 대한 기존 논의 요약
- 가. 문제점
- 나.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시 고려 사항
- 다. 미확정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에 대한 견해들
- 1) 미확정 민사 등(행정, 특허 포함, 이하 같음)·형사 모두 신중검토 입장
- 2) 미확정 민사 등 형사 모두 공개 입장
- 3) 미확정 민사 등 판결서 선(先) 공개 입장



- 라. 현재 대법원의 입장
- 2. 판결서 공개 관련 법률개정안 및 의견회신 현황
- 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의안번호 5780호)
- 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의안번호 5782호)
- 3. 법률 개정 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문제
- 가. 현재 명시적인 법률 규정 없음
- 나.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미확정 판결서 공개 가능성
- 다. 법원 및 법원공무원의 면책 문제
- 4.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공개제한 신청권의 문제
 - 가. 신청 등에 의한 판결서 열람 제한 현황
 - 나. 미확정 판결서에도 민소법 제163조의2, 형소법 제59조의3에 따른 열람 · 복사 제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Ⅳ. 비실명처리 현황 및 관련 문제
- 1. 비실명처리 현황
 - 가. 비실명화 사업소 업무처리절차
- 나. 현 비실명화 작업 외주 인력 및 예산
- 다. 현 비실명화 작업 시스템 연간 최대 가동 범위



- 라. 지능형 비식별화솔루션 추진현황
- 2. 미확정 판결에 대한 비실명처리 방식의 차별화 여부
 - 가. 문제점
 - 나. 현행 비실명처리기준
 - 다.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비실명처리기준 강화 여부
- 3. 특허사건에서 비실명처리 예외를 둘 것인지 여부
- 가. 문제점
- 나. 특허시건의 비실명처리 현황
- 다. 특허시건에서 비실명처리기준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4. 비실명처리 대상에 법인명 포함 여부
- 가. 비실명처리기준의 개정(2019. 1. 14. 시행)
- 나. 법인 등 명칭 비실명처리 필요 여부
- 다. 비실명처리기준 재개정 논의 현황
- 5. 사진 등 영상에 대한 비실명(또는 비식별)처리 문제
- 가. 판결서 내용에 사진이 포함된 경우(관련 사례)
- 나. 판결서에 포함된 사진에 대한 비실명(또는 비식별)처리 문제



- V. 판결서 제공형태 내용 복사, 키워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여부
- 1. 문제점
- 2. 현재의 판결서 제공형태
- 3. 견해 대립
- 4. TEXT PDF 제공 시 고려사항

[별첨] 비실명처리기준 예규 개정 연구반 활동계획



l. 보고 배경

- 2020. 4. 9.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임시회의에서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에 관한 의안이 제안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보고를 받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 이에 위 의안 설명자료에 담긴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그간의 검토내용과 정책방 향을 보고 드리고자 함

Ⅱ. 현행 판결서 공개방식(3가지) 요약

1. 확정 판결서 인터넷 열람

■ 개요

●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임

■ 추진 경과

- 2011. 7. 1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공개 제도 규정
- 2012. 11. 비실명화 프로그램 및 비실명화 검수시스템 구축 완료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 허용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 허용
- 2019. 1. 1.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 · 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u>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u> <u>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u>한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제10859호, 2011, 7, 18.>

- ① (시행일) 이 법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 복사)

-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864호, 2011.7.18〉

제1조(시행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u>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u>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2.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제2조(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 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한다.

■ 운영 현황

- 판결이 확정된 이후 비실명화 사업소에서 판결서의 비실명처리를 완료한 후 판결서 공개관리시스템에 등록함
- 누구든지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판결서 및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판결서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하여 검색, 열람할 수 있음
 - 미확정 판결서, 2012. 12. 31. 이전에 확정된 형사판결서 및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판결서와 소액사건, 상고이유서미제출기각,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서는 제외

<u>판결서검색</u> 열람목록	결제목록 장바구니				판결서 뷰에 수동 다운로드 🕹
이래의 카테고리 중 원	하시는 검색 유형을 선택	ば하신 후 검색조건을 입 락	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민사·행정·특	허·선거특별			
* 선고일자(확정일자)	2018.03.12	~ 2019.03.12	(※최대 1년까지 입력가능)		
법 원 명		선택			
사건번호	선택하세요 🗸		(※사건번호 전체를 (u력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결과 [내 재검색		
검색 어			☐ 결과 내 재검색 ⁰	Al	
		는 검색어를 입력해야 합니 라 관계없이 검색이 가능합			



2. 전자우편 예규에 따른 판결서사본 제공

■ 개요

● 인터넷 열람가능 판결서를 제외한 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판결서사본을 이메일, 방문,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

■ 추진 경과

- 1996. 12.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정 ⇒1998. 1. 1. 시행
 -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특정사건의 판결문을 제공 받게 됨 (☜ 확정판결에 대하여 허용하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신 상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
- 2004. 12. 31.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재판기록 및 정보의 공개는 재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재판 내용의 확인을 통하여 사법절차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u>하급심 판결의 경우 하급심판결공보 등의 수록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고 각급 법원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주요 최신 판결을 비실명처리 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u> 다만, 전면적 공개까지 이어지려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발생방지를 위한 비실명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그와 연계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6. 1. 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보고

4. 판결문 이메일 송부 방안

- <u>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당해 판결문을</u> 제공함
- 대법원 및 각급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제공코너를 신설하여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u>판결문의 성명</u>,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신청인의 이메일로 송부함
- 현재의 정보공개청구보다 편리한 제도이고 법원도서관의 특별창구를 통하여 판결문을 검색한 이용자 들도 이메일 송부제도를 통하여 판결문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음
- 현재는 확정판결에 한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u>미확정판결에</u> 관하여도 이메일 송부를 할 계획
 - 2006. 4. 25.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제정(2006. 5. 1. 시행)



■ 관련 규정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2조 (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 ① 모든 국민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③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한다.
 - 1.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
 - 2. 2015. 1. 1. 이후 확정되어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문
 - 3. 가사 사건의 판결문
 - 4.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의 결정무
- ④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

- ① 판결문을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은 해당 판결문을 이관한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u>정보통신망·방문·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u>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등의 홈페이지의 판결문 제공 신청 코너를 이용하여야 하다.
- ③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 2. 제공을 원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
 - 3.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문의 제공방법

제6조 (판결문의 제공방법)

- ①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대상 판결문 내용 중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라 비실명 처리 한후 당해 사본을 전자우편 ·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직접제공의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문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변형하는 작업은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 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 ③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은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 공보관ㆍ기획법관 등 업무상 필요한 자가 법원행정



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운영 현황

- 모든 국민은 판결문을 보유 또는 보존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각급법원 및 법원기록보존소에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서의 법원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
-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함
 - 인터넷 열람 가능 판결서와 가사사건 판결서 등 제외
- 판결서 제공신청이 접수되면 비실명화 사업소에서 비실명처리를 완료한 후 판결서 를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함

3.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방문열람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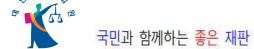
●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특별창구를 통해 법원 내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 스템을 이용하여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직접 검색·열람하도록 하는 제도

■ 추진 경과

- 1996. 12. 31. 정보공개법 제정 ⇨ 1998. 1. 1. 시행
- 2004. 12. 31.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 위「2. 전자우편 예규에 따른 판결서사본 제공」의 해당 부분 참조
- 2006. 1. 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보고

3. 특별창구를 통한 판결문검색시스템의 활용 방안

- 가. 특별창구의 마련
- <u>법원도서관에 특별창구를 마련하여 위 법원 내부용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의 사</u>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함
- 외부 열람자는 위 컴퓨터를 통하여 판결문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음
- 나. 열람대상자 및 이용방법
-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u>이용대상자를 ① 검사, 검찰공</u> 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②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서



- 소속 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③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정함
- 특별창구에서는 검색·열람만 가능하고 판결문 출력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에 따른 이메일 송부 방법을 활용하게 함
 - 2006. 4. 25.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제 정 ➡ 2006. 5. 1. 시행

■ 관련 규정

●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원 판결문(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특별창구의 설치와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창구의 설치 등)

- ①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를 법원도서관에 설치한다.
- ② <u>특별창구에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u> 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법원도서관장은 법원도서관 직원 중에서 판결문 검색·열람 업무의 담당자(이하 '업무 담당자'라고 하다)를 지정하여야 하다.

제3조 (검색・열람 대상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내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창구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 1.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 2.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 ② 법원도서관장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목적임이 명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검색・열람의 방법 등)

- ① 판결문의 검색・열람은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신청인 본인만이 할 수 있다. 판결문의 검색・열람시에 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포함)를 지참하여야 한다.
- ② <u>특별창구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함에 있어서는 검색・열람 대상 판결문을 출력하거나 그 전자자료를</u> 내려 받아서는 아니 되고, 검색・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영 현황



- 내규 제3조 제1항 제3호를 넓게 인정하여 사실상 신청자 대부분을 승인함
-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 부를 검색·열람할 수 있음
 - 가사/소년 사건은 제외
- 검색·열람만 허용(대상 판결문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없음)
 - 비실명처리되지 않은 판결서를 제한 없이 검색·열람 가능

 그 후 2011. 9.

 30. 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u>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장소 :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컴퓨터 4대)
- 이용현황
 - 하루 이용자 약 40명(이용가능시간 : 1시간 30분, 최대 이용가능시간 : 3시간)
 - 1일 예약 최대인원 20명(예약자가 미사용한 시간은 현장 신청인에게 이용 승인)
 - 약 2주 전부터 신청 가능(이용일 기준 2~3일 전 사용승인)

Ⅲ.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여부 및 관련 문제

1. 미확정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에 대한 기존 논의 요약

가. 문제점

- 현재 인터넷 검색·열람 대상이 아닌 판결서¹)는 전자우편 예규에 따른 판결서사본 제공이나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라결서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서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미확정 판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임
-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외부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현재 관련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¹⁾ 미확정 판결서, 2015, 1, 1, 이전에 확정된 민사 판결서,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



나.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시 고려 사항

■ 판결서 인터넷 공개 확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긍정적 측면

- 판결서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판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사법작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통하여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 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판(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 움이 됨
- 소 제기 전 유사 판례 검색을 통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감소케 함으로써 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부정적 측면

- 판결서 공개 확대로 인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또는 영 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판결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공범에 대한 수사 방해나 범죄 수법 모방으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해, 국가기밀 유출 등 공익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비교법적 측면 - 각국의 판결서 공개제도

● 각국의 판결서 홈페이지 등 공개 현황

ш	_
- 41	4

	홈페이지 등 공개 방법	공개의 범위	임의어 검색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연방정부인쇄국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료 공개, LexisNexis 등 사설 법률 데이터베이스 회사에 자료 제공(Project Hermes) 한 해 선고되는 판결 수가 매우 적음 (100건 이하)	선고된 판결 전면 공개 원칙	연방정부인쇄국 홈페이지와 사설 데이터베이스에 서만 가능
연방항소법원	PACER ²⁾ 시스템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일부로 공개 개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판결서 무료 공개	선고된 판결 전면 공개 원칙 (PACER의 경우 비공개 사례 발견)	PACER 시스템에서는 불가능 일부 연형산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기능

	• PACER 시스템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일부로 공개	선고된 판결 전면 공개 원칙	불가능
나머지 연방법원	• 개별 법원의 홈페이지, 연방정부인쇄국 의 FDSYS, CourtWeb을 통한 무료 공 개 참여(법원별 결정)	선고된 판결 전면 공개 원칙 (CourtWeb의 경우 선별된 판결 제공 명시)	일부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뉴욕 주	• 통합법원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및 Westlaw 제공 • 사실심 법원 판결 등 선별기준 제시	최고상소법원 및 상급법원 항소부 판결 전면 공개, 나머지 판결 선별적 공개	가능
캘리포니아 주	• 공식 홈페이지 게시 및 LexisNexis 제 공 • 미공간 판결도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명시	공간, 미공간 여부 불문 전면 공개	가능
매사추세츠 주	• 통합법원시스템 게시 및 LexisNexis 제 공 • 미공간 판결도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명시	공간, 미공간 여부 불문 전면 공개	가능

■ 캐나다, 영국, 호주

	홈페이지 등 공개 방법	공개의 범위	임의어 검색
캐나다	• 대법원 홈페이지, CanLII 등에 게시	• 선고된 판결 전면 공 개 원칙	가능
영국	• 대법원 홈페이지, BAILII 등에 게시 • 온라인으로 공개되지 않은 일부 하급심 판 결도 법원에 사본 청구할 권리는 있음	• 대법원의 경우 전면 공개하나 하급심의 경 우 선별 공개	가능
호주	 대법원 홈페이지, AustLII 등에 게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2000년 이후 판결은 선고 당일 판결이 온라인상 공간되는 것으로 명시 연방법원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검색 가능 	• 대법원의 경우 전면 공개되는 것으로 보이 나 기타 법원의 경우 각 법원 규칙에 맡겨 져 있음	가능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홈페이지 등 공개 방법	공개의 범위	임의어 검색
--------------	--------	-----------

^{2) &}quot;Public Access to Court Electric Record"의 약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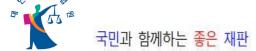
독일	일부 선별된 판결[공개할 이익이 명백한 경우]을 홈페이지에 게시 원칙적 무료, 영리적 목적일 경우에만 유료 연방대법원의 경우 2000년 이후 판결은 이유 기재 없는 불수용 판결 또는 배제 판결을 제외하고 공개함을 명시	선별된 판결만 공개 피고인과 증인의 인적 사항은 비실명처리 판사·검사·변호인의 성 명은 공개	가능
프랑스	• 일부 선별된 판결을 법률정보서비스 웹페이지 게시 지 개시 • 파기원 홈페이지는 중요 파기원 판결을 게 시	 파기원의 경우 전면 공개되나 하급심의 경우 선별된 판결 공개 사건관계인의 성명과주소는 비실명처리 판사·검사·변호인의 성명은 공개 미확정 판결은 미공개 	가능
네덜란드	 사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선별적 공개 일부 사건 진행 경과도 게시 익명화 처리 기준 홈페이지에 게시 	• 선별된 판결만 공개	가능
일본	 재판소 공통 홈페이지에 선별된 판결 공개 2008년 현재 최고재판소 판결의 공개율은 0.9% 하급심까지 포함하면 0.1%밖에 되지 않음 	• 선별된 판결만 공개	가능

■ 각국의 판결서 공개제도 요약

- 이른바 보통법(common law)의 관념이 인정되어 판례가 공식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에서는 대체로 선고된 판결을 전면 공개하고 있음. 법문화적 측면에서도 'public records 공개원칙'이 오래 전부터 자리잡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서만들어지는 기록의 개인 식별정보를 편집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선례성 있는 판결만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제3자의 소송 기록열람권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적 이익을 소명하여 법원장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인정됨.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도 판결서를 선별적으로 공개함에 있어서는 독일과 대동소이함

■ 우리나라 판결서의 공개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2011. 7. 18.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확정된 판결서에 대한 제3의 검색·열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음. 그러면서도 판결서의 제3자 검색·열람



허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결서 공개의 주체인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서 공개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2019년부터는 형사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공개 대상인 확정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이 더 향상되었음

다. 미확정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에 대한 견해들

1) 미확정 민사 등(행정, 특허 포함, 이하 같음)·형사 모두 신중검토 입장

■ 논거

- 사회적으로 의미 있거나 중요 사건에 대한 판결서는 이미 공개
- 그동안 누적된 사건의 판결서만으로도 학술적, 공익적 수요 충족 가능
- 여론 포함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재판이 독립되어야 하는 근본 가치 고려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서 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공개된 판결서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유무죄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진행 중인 상급심 재판 또는 관련 사건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판결 선고 직후에 공개해야 하므로 비실명화 작업 및 판결서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거나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음
- 관련 사건의 소송관계인이 확정되지 않은 특정 사건의 판결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음
- 공적 인물이나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서는 별도의 방식(공개된 법정에서의 판결 선고, 각급 법원 공보관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게시)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음
- 현재 각급 법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사건에 관한 판결서는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설문조사 결과 법관들 다수 의견

- 2018. 4. 전국 법관 2,98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공개에 반대함
 - 민사의 경우, 318명(28.47%) 찬성 vs 782명(70.1%) 반대
 - 형사의 경우, 230명(20.59%) 찬성 vs 874명(78.25%) 반대

2) 미확정 민사 등·형사 모두 공개 입장



■ 논거

- 재판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근거 없는 억측 방지, 판결서 공개를 통해 국민적 여론 수렴, 하급심 판시 법리에 대한 정보공유 욕구 충족 필요
-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서를 공개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 판례의 형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판결서 공개제도의 도입취지 및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요청에 부합함
- 사회적 관심이 크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서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미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시간이 경과하여 확정되면 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개 시기의 문제에 불과할 뿐 미확정 판결서와 확정 판결서 사이에 공개 여부를 달리할 본질적 차이가 없고, 공개의 범위나 분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는 비실명처리 또는 비공개결정을 통하여 달성 가능함
- 공개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미확정 판결서 출력 시 워터마크 등으로 미확정 판결서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처 가능

■ 금태섭 의원 발의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의 내용

■ 2018. 8. 21.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

■ 판결서 공개 확대

- 1.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3. 판결서 공개 범위에 관하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함께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재판공개 원칙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4. <u>공개된 판결서는</u> 민사·행정·선거·특허사건의 판결서뿐 아니라 형사 판결서에 대하여도 <u>임의어 검색을</u> 허용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이 아닌 국민도 판결서를 용이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미확정 민사 등 판결서 선(先) 공개 입장

■ 형사 판결서의 경우 민사 등 판결서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 형사 미확정 판결서는 <u>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우려</u>가 있고, 상소심에 계속 되어 있는 경우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
-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판결서가 공개되면 결론이 바뀌어도 당사자는 이미 치



명적 손해

■ 형사 판결서의 경우 법무부도 신중검토 의견

● 판결 확정 전까지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특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미확정판결서 공개 시 피해자 등의 사생활 비밀 침해 또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

■ 혀실적 고려

● 민사 등 미확정판결서만 먼저 공개한 후 부작용 등 시행경과를 확인하여 형사 미확 정판결서 공개 여부 결정이 현실적으로 필요

라. 형재 대법원의 입장

- 민사등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고, 부작용 등 시행경과를 확인하여 형사 미확정 판결서까지 확대하자는 입장
- 현행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법원공무원의 면책조항 유지 필요
- 금태섭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2019. 9. 2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 정의견 회신함

2. 판결서 공개 관련 법률개정안 및 의견회신 현황

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의안번호 5780호)

■ 법률안 내용

-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 허용
-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항 삭제
- 검색 및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
-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현 행	금태섭 의원 개정안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 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 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 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 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의견회신 내용

- 2017. 9. 25. 의견 회신 ➡ 신중검토 의견
- 2019. 9. 26. 수정의견 회신
- ① 판결서 공개 범위를 미확정 민사등 판결서까지 확대 ⇨ 입법취지 공감
- ② 개인정보 보호 조치 삭제 부분(안 제163조 제2항, 제5항) ⇨ 신중 검토
- ③ 기계 판독 가능 형태 제공 부분(안 제163조의2 제2항) ⇨ 신중 검토
- ④ 형사면책 삭제 부분(안 제163조의2 제3항) ⇨ 신중 검토

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의안번호 5782호)



■ 법률안 내용

- 미확정 판결서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 허용
-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항 삭제
- 검색 및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
-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의견회신 내용

● 2017. 8. 25.자 회신 ⇒ **신중검토** 의견

3. 법률 개정 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문제

가. 현재 명시적인 법률 규정 없음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임
- 현재 미확정 판결서의 경우 ① 전자우편 예규에 따른 판결서 제공 신청을 통해 사본을 제공받거나, ②「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에 따른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을 통해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검색· 열람할 수 있음
 - □ 그러나 특별열람실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³)의 일환으로 2006. 5. 대국민 판결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특별열람실 설치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의 이름 등 비실명처리를 하지 않은 판결서를 공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현행 판결서 공개 방식에 대하여 외부의 지속적인 비판이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 공개범위를

³⁾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⁴⁾ 개인정보 보호법 ☞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확대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미확정 판결서 공개 가능성

■ 관련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 란 <u>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u>
- 3. "공공기과"이라 다음 각 목의 기과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1) 국회, <mark>법원</mark>,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 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제3조(정보공개의 워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곳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이하 생략)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제2조 제3호 가목 1), 제3조), 판결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제2조 제1호), 법원이정보 공개의 일환으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함
 - 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 할 의무를 규정
- 미확정 판결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등)인지 여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1설**(미확정 판결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 미확정 판결서가 공개되는 경우, 공개된 판결서에 대한 여론의 관심, 비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u>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재판부는 이미 판결을 선고한 이후라는 점</u>에서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2월**(미확정 판결서가 경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
 - 공개된 미확정 판결서로 인하여 해당 법관뿐만 아니라 상급심의 법관, <u>관련사건</u> 이나 유사사건의 담당 법관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비공개대상정보)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재판부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그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나, <u>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으로 공개하게 되는 경우 모든 사건에 대하여 그 사유를 사전에 판단하여 검색</u>이나 제공을 제한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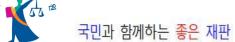
■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미확정 판결서 등 공개의 장단점

장점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판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 <u>법률 개정 전에 법원이 선제적으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판결</u> 서 공개에 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음
- 미확정 판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특별열람실을 폐지하는 경우, 특별열람실 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 단점

- 확정 판결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되는 반 면, 미확정 판결서는 정보공개법이라는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에 근거하여 공



개된다는 점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합성 측면에서 어색함

- 비실명처리를 하더라도 소송당사자 및 사건관계인의 민원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함
-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미확정 판결서 공개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나, <u>미확정 판결서의 경우 현행 민소법, 형소법상의 법원 및 판결서 공개 담당 법원공무원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음</u>(아래에서 상론)

다. 법원 및 법원공무원의 면책 문제

1) 개인정보 보호의무 및 위반 시 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u>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u>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u>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중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2. 제18조제1항 · **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판결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해당함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 해당함

- ★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 ➡ 법원
- 판결서 공개 과정에서 비실명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됨

※ 【참고】 판결문 공개로 인한 당사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례

- 1987. 4. 20. <u>확정된 이혼사건 판결서에서</u> 부모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표시는 비실명처리 되었으나, 사건본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석0외 1명)의 이름, 생년월일이 그대로 표시되어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하급 심판결집, 인터넷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게시되었음. 원고들은 2015. 3. 24.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 피고인 방00가 2016. 8. 26. <u>자신의 형사항소심 판결이 기자들에게 공개되어</u> 언론기사 및 악성댓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기자, 연합뉴스를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소송 제기함

2) 현행법상 담당 공무원 등의 면책 규정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 · 복사)

-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u>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u>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 복사)

-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현행법상 확정 판결서5)의 열람·복사와 관련하여서만 법원공무원 등의 면책규정

⁵⁾ 다만, 민사 등 판결서의 경우 2015. 1. 1. 이후 확정된 사건, 형사 판결서의 경우 2013. 1. 1. 이후 확정된 사건



을 두고 있음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조 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규정함
- 위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
 는 한 판결서 공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
- 3)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면책방안
 - 미확정 판결서 공개의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판결서 공개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담당 법원공무원 등의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높아지므로, 민·형사상 책임 면제 필요성은 더욱 커짐
 - 판결서 공개 및 비실명처리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상 책임범위가 확대될 경우,
 판결서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와 지나친 비실명처리에 따른 가독성 문제의 악화로
 이어져 공개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판결서 공개범위를 미확정 판결서로 확대하는 경우, 법원 및 법원공무원이 미확 정 판결서 등 공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명예훼 손 등의 민·형사상 분쟁에서 면책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4.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공개제한 신청권의 문제
- 가. 신청 등에 의한 판결서 열람 제한 현황
 -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 · 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 복사, 재판서 · 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 · 등본 · 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 1. <u>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u>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2. <u>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u>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 복사제한)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판결서(해당 법원의 판결서와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에서 같다)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결서의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하는 열람 및 복사(이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 복사제한)

-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 <u>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u> 허용하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2. <u>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u>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_
-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 5.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위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mark>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mark>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복사의 제한)

- ①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 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나. 미확정 판결서에도 민소법 제163조의2, 형소법 제59조의3에 따른 열람 · 복사 제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문제점

● 민소법 제163조의2 및 형소법 제59조의3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복사 및 그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미확정 판결서에도 위 법상의 열람·복사의 제한 신청 및 결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됨

■ 대법원 규칙의 취지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민사판결서 규칙')
 - 열람제한조치를 하는 법원을 <u>당해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으로 규</u>정함. <u>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려는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판결서 열</u>람제한결정을 할 수도 있음
 - 열람제한조치를 할 재판서의 범위에 해당 법원에서 선고했거나 선고할 판결서뿐 아니라 그 상 하급심 판결서와 재심대상 판결서도 포함함
-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형사판결서 규칙')
 - 제한대상 : 소속 법원의 판결서 등, 상·하급심 판결서와 재심대상 판결서
 - 제한시기 : <u>'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결이 선고된</u> 후라면 확정되기 전에도 열람제한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함

■ 검토

- 현행 법령상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u>판결 선고 후 확정 전 판결서라는 이유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불가능하다면</u> <u>확정 판결서에 대한 제한 신청 및 결정을 할 수 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u> 할 우려가 있음(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
- 법령의 문언, 규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u>해석상 미확정 판결에 대하여도 민소법</u> <u>제163조의2, 형소법 제59조의3 및 민사판결서 규칙, 형사판결서 규칙이 정한 열람</u> 복사의 제한 신청 및 결정 등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함



- 실무상 미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도 열람·복사 제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제5조 제3항에 따라 판결서 정본을 송달할 때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 안내문'을 함께 송달하고 있고, 형사 재판서 등의 경우에도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관한 예규 제3조의3에 따라 판결서 등의 열람·검색 제한 신청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있음
- 다만,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제한신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흡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 양식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Ⅳ. 비실명처리 현황 및 관련 문제

1. 비실명처리 현황

가. 비실명화 사업소 업무처리절차



판결문 데이터 접수 → 1차 비실명 편집(사업자 수행) 6) → 2차 비실명 편집 확인(사업자 수행) 7) → 품질검수(사업자 수행) 8) → 검사(법원관리자) 9) → PDF파일로 변화 → PDF변화 검증(법원관리자)

^{6) 1}차 검수편집자는 검수 대상 판결서 등을 조회하여 검수목적에 맞게 검수편집을 완료하고 검수시스템에 등록

^{7) 2}차 검수편집 확인자는 1차 검수편집자가 검수한 판결서를 대상으로 비실명화 검수 및 편집을 실시

⁸⁾ 표본추출의 기준 모집단은 처리 대상량에 따라 사건유형, 선고법원 등이 될 수 있으며, 표본 검수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모집단 전체를 재작업처리

^{9) &}quot;품질검수"를 통과한 판결서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 검사팀에서 표본 검사를 통한 검사를 수행함.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작업결과를 검사승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검사불가 처리함. 검사불가 처리된 경우 해당 모집단 전체를 재작업처리 합[샘플링검사(30%): 공개사건은 25% 샘플링검사, 제공신청사건은 100% 검사하고 있음]



나. 현 비실명화 작업 외주 인력 및 예산

■ 판결서 비실명처리 부분 2020년도 예산은 총 31.64억

■ 2020년 계약현황(2020. 1. 1. 기준)

	판길	별서 공개(비	l실명화) 내	역	OII 4 I	MITT 기아어 III	
구분	공개	사건	제공사건	소계	예산 (계약금액)	계약업체 (지분비율)	비고
	형사사건	민사사건	세당사건	조계		(Alede)	
2020년도	24만건	21만건	5만건	50만건	31.64억	㈜디앤디기술(90%), ㈜스토리안트(10%) 컨소시엄	1년 계약/ 매년 사업자 재선정

■ 판결서 비실명화 사업소 인원 구성현황(2020. 1. 1. 기준)¹⁰⁾

	구분			비고
		관리인원	7	
전담	TLO	공개사건(형사)	32	
사업자 인원	작업 인원	공개사건(민사)	30	
		제공사건	10	
		소계	79	
버의		업무총괄	1	
법원 관리		사업관리/서무	1	
인원 인원		인수검사(검수)업무	9	
		소계	11	

다. 현 비실명화 작업 시스템 연간 최대 가동 범위

■ 시스템적 측면

● 현재 구축된 시스템으로는 연간 최대 700,000건 정도의 비실명화 작업처리가 가능

■ 인적 측면

- 현 실무에 비추어 100,000건을 비실명화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연간 인원은 14명임
- 따라서 700,000건을 처리할 경우 연간 필요한 최소 인원은 98명으로 예상됨

라. 지능형 비식별화솔루션 추진 현황

10) 업무량에 따라 외주 업체에서 자체 인원 증감시킴



■ 지능형 비식별화솔루션 개요

- 개인정보를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이하 '비실명처리기준')에 따라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동 비실명처리
- **기계학습**(머신러닝) 및 **지식작업**을 통해 반복 학습함으로써 비실명 정확도를 향상 시켜 비실명화 사업소의 업무효율 증대 추진
 - 기계학습: 판결서에 최종적으로 비실명처리된 식별자(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를 수집하여 정형화된 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사전 패턴화 작업
 - 지식작업: 검증테스트 인력을 통해 기계학습을 통해 생성된 학습모델의 정확도 분석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사후 패턴화 작업

■ 사업추진 경과

- 2018년(1단계): 민사, 특허 판결서 비식별화 기계학습 시스템 구축
- 2019년(2단계): 형사, 행정 판결서 비식별화 기계학습 시스템 구축
- 2020년(예정): 2019년 사업 이후 생성된 판결문에 대한 검증테스트 및 솔루션 기능 개선

■ 지능형 비식별화솔루션의 정확도 및 사용률

- 검증테스트 인력을 통해 지능형 비식별화솔루션 학습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 비실명처리대상 정보 여부 확인 및 그 대상자 편별(인명, 지명 등) 일치여부 기준

업무구분	학습문서 건수	테스트문서 건수	정확도
민사,특허(1단계)	687,744건	50,826건	55%
형사(2단계)	1,307,842건	15,310건	75%
행정(2단계)	61,926건	14,710건	55%

● 비실명화 사업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판결서등 비실명화 검수시스템'상 **자동비실명 사용률** 통계(2019년 기준)는 다음과 같음



사건구분	판결서 수	판결서 페이지 수	자동 비실명 처리건수	검수 비실명 처리건수	검수 비실명 복원건수	자동비실명 사용률
01월	39,880	241,701	205,310	909,718	38,363	15
02월	24,724	140,594	111,584	570,855	21,715	13
03월	29,877	176,683	148,603	707,402	27,054	14
04월	37,795	229,814	158,828	930,617	30,345	12
05월	35,899	207,079	162,426	803,750	32,384	13
06월	30,579	176,473	153,989	688,903	28,220	15
07월	44,162	250,184	229,861	946,985	43,218	16
08월	35,899	208,817	170,023	779,022	33,464	14
09월	45,241	253,237	228,817	947,951	44,753	16
10월	49,135	269,949	238,106	944,650	46,738	16
11월	46,254	269,488	220,614	962,890	39,707	15
12월	52,997	301,094	227,003	1,077,710	43,054	14
평균	39,370	227,092	187,930	855,871	35,751	8
합계	472,442	2,725,113	2,255,164	10,270,453	429,01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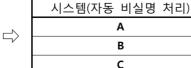
- 자동 비실명 처리건수(A): 시스템에 의하여 1차 비실명 변환 건수
- 검수 비실명 처리건수(B): 시스템에서 자동 식별하지 못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검수 인력이 직접 처리한 건수
- 검수 비실명 복원건수(C): 자동 비실명 처리건수 중 편집자가 삭제한 건수
- 자동비실명 사용률: (A C) / (A + B)
- 시스템 정확도와 자동비실명 사용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비실명처리대상 정보를 변환한 알파벳 대문자를 검수 인력이 수정¹¹⁾하는 경우에도 자동 비실명 처리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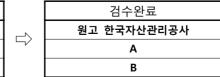
■ 2020년 지능형 비식별화솔루션 고도화 사업

 2019년 사업 이후 비실명사업소 검수 완료한 판결서를 추가 학습하고, 검증 테스트 인력을 통해 사후보완이 필요한 부분 분석하여 정확도와 솔루션 사용률을 지속적 으로 개선 예정

11) 예시)

판결서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甲
피고 乙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으로 비실명처리대상에서 제외되나, 시스템에서 이를 비실명처리대상으로 잘 못 인식한 경우 이후 변화된 알파벳 대문자도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2. 미확정 판결에 대한 비실명처리 방식의 차별화 여부

가. 문제점

미확정 판결서의 경우, 확정 판결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고 보아 별도의 강화된 비실명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

나. 현행 비실명처리기준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처리기준(예규)로 일원화되어 있음
- 비실명처리 대상
 -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자연인', '법인', '단체' 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는 전부 비실명처리의 대상이 됨

■ 비실명처리 범위

- 성명(법관, 검사, 법무법인, 변호사, 변리사 성명 제외)
- 법인 등 명칭(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제외)
- 성명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인터넷 주소도 포함)

■ 비실명처리 방식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는 방식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5조 (비실명 처리의 방식)

- ①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 ② 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 ③ 증거목록을 포함한 판결서 등이 PDF 파일 등일 경우. [등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다.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비실명처리기준 강화 여부 ⇨ 신중검토 의견

- 현재 확정, 미확정 판결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비실명처리되고 있음
- 확정 판결서의 경우도 현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실명처리되고 있으므로 더욱 강화된 비실명처리기준 설정에 난점이 있고, 확정, 미확정 판결서의 비실명처리기준을 달리 하는 경우, 미확정 판결서의 비실명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 스템개발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추가 예산 지출이 필요함
 - (📵 판결선고 후 비실명처리 + 🗵 판결확정 후 비실명처리) 2단계 처리 필요
- 비실명처리기준을 달리 할 경우 판결 확정 전, 후 비실명처리의 기준이 다른 2가지 버전의 판결서가 존재하게 되어 혼란을 줄 수 있고, 비실명처리 수준의 차이로 인 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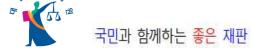
3. 특허사건에서 비실명처리 예외를 둘 것인지 여부

가. 문제점

■ 특허사건의 경우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판결서 내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비실명처리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나. 특허시건의 비실명처리 현황

- 현재 모든 특허법원 판결서에 비실명처리 완료
 - 특허법원 개원 이후 모든 판결서에 대하여 비실명처리가 완료됨
 - 모든 판결서를 법고을lx 업데이트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 심결문은 별도의 기준으로 비실명화를 해오고 있음
 - 심결문의 비실명화 기준
 -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



으므로, 비실명화 대상이 아님

- 자연인의 이름은 실명, 주소는 부분 기재(시·도 이후는 비실명)

다. 특허시건에서 비실명처리기준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1) 특허법원 논의사항

■ 논의사항1: 실명으로 판결서를 공개하는 방안

- 현재 상태에서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다만 법률 상 아래와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하다면 가능하다는 입장
- 법률에 비실명화 사유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당사자에게 판결서 비실명화 조치를 요청할 신청권을 부여
- 당사자는 판결서 비실명화 신청을 할 때 ① 비실명화 사유, ② 구체적인 비실명화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가장 바람직한 것은 별지에 당사자가 직접 비실명화 처리한 판결서를 첨부)
- 법원은 별도의 결정문 없이 재판장의 허부결재로 처리
- 재판장의 결재에 따라 실무관이 기존 판결서를 당사자가 직접 비실명화 처리한 판결서로 교체

■ 논의사항2: 특허청이 '피고'인 판결서에 한하여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

- 특허청이 피고인 사건과 사인이 피고인 사건으로 구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매우 어색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음
 - 등록무효사건(피고가 사인)의 경우 이미 특허가 공개된 상황이므로 오히려 실명 으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가 적음
 - 반면, 거절결정의 경우(피고가 특허청) 원고로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가 일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면, 원고가 기술이전 등의 계약체결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허가 거절되었다는 사정이 기재된 실명 판결서가 공개될 경우 원고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음

2) 검토 ⇨ 신중검토 의견

● 현재 특허법원 판결은 비실명처리기준(예규)에 따라 개원 이후 모든 판결서에 대하 여 비실명처리가 완료됨



- 특허사건의 경우도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비실명처리 없이 또는 비실명처리기준을 완화하여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책임이 문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특허법원 판결서만을 위해 별도로 완화된 비실명처리기준을 도입하거나 판결서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함

4. 비실명처리 대상에 법인명 포함 여부

가. 비실명처리기준의 개정(2019. 1. 14. 시행)

■ 2019. 이전까지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법인은 제외함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 2016. 12. 행정차치부(현 행정안전부) 발행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① "살아 있는" ②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비실명처리 대상에 법인 등의 명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¹²⁾은 예외

나. 법인 등 명칭 비실명처리 필요 여부

■ 필요하다는 견해

- 법인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인 등의 대표자나 이사 등 임원인 경우 법인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동일성이 식별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삼성전자 부회장 A ⇒ 'A=이재용' 특정 가능
- 실무에서는 비실명처리기준 개정 이전에도, 법인 등에 대한 공개로 개인정보 유출가 능성이 존재하고 개인의 권익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를 하여 옴
 - 법인 등이 사건당사자인 경우 중 90% 정도 비실명처리

¹²⁾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 등이 이해당사자로 판결서에 등장하는 경우 중 70% 정도 비실명처리
- 전체적으로 판결서에 등장하는 법인명의 약 80% 정도 비실명처리
- 사법인이나 사적 단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재판의 투명성 강화라는 이익이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 등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또는 인격권 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인 등의 경우에도 판결서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사회적 평가, 신용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 법인 등의 명칭에 대하여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판결서의 가독성이 떨어져 판결서 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개정 전 비실명처리기준에 의하더라도, 법인 등의 대표자 성명, 법인 등의 주소, 대표자 주소 부분이 삭제되어 법인 등 또는 그 대표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음
- 공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인 등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사항들이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이사 등 임원에 관한 정보는 재판의 유무와 관련 없이 등기 부 등을 통해서 공시되고 있으므로 법인 등의 명칭 공개로 대표자 또는 이사 등에 대한 정보가 새로이 유출된다고 할 수 없음

다. 비실명처리기준 재개정 논의 현황

■ 외부 비판 및 요청

- <u>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u>되는데, 현행 비실명처리 기준은 '법인,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
-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 당사자의 이름, 주소, 근무지, 회사명 등 개인정보 부분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기준을 완화하여 일관되게 적용해 달라는 요청
- **비실명처리기준 예규 개정 연구반에서 개정여부 검토 예정임** (☜ 연구반 활동계



획은 [별첨] 참조)

- ① 찬성론
 - 정부기관의 법령 해석 존중 필요
 - 외부 비판 중 합리적이고 개선할 부분은 수용할 필요
- ② 반대론
 - 2019. 1. 개정된 예규를 다시 되돌리게 되는 결과
 -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 해석은 사법부의 권한

5. 사진 등 영상에 대한 비실명(또는 비식별)처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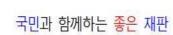
가. 판결서 내용에 사진이 포함된 경우(관련 사례)

- 이른바 '레깅스 판결'에 대한 법원 내부의 논의 경과
 - 이른바 '레깅스 판결'
 -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뒷모습(상반신부터 발끝까지)을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606)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¹³⁾하면서 판결서 공소사실 부분에 무단 촬영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첨부함
 - 젠더법연구회의 논의
 - '레깅스 판결'의 언론보도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에서 사진 점부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재판다시돌아보기' 소모임을 통해 '재판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방지 노력과 침해 시 구제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 중임

■ 해당 판결서 사본 제공 현황

● 비식별처리 후 열람 및 복사제한 처분

^{13) 2019. 10. 24.} 선고 / 검사 상고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임





- 검사 상고로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 자에 의한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이 있었고, 비실명화 사업소에서 비식별 처리가 이루어졌으나(아래 참조), 해당 판결서에 대해 피해자 측의 공개제한신청에 따른 공개제한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제공되지 않음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D 버스 내에서,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이 하차를 하기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LG V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진삭제

나. 판결서에 포함된 사진에 대한 비식별 처리 문제

■ 논의 필요성

 레깅스 판결을 둘러싼 논의는 판결서에 첨부된 사진의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피해자 (피촬영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방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결서에 특 정인의 얼굴 등 신체 사진이 첨부된 경우, 해당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 그 비실명처리 또는 공개제한의 법적 근거와 방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관련 규정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u>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u>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비실명처리기준(재일 2014-2)

제3조 (비실명 대상 판결서 등)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u>모든 판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u> 위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제4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 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u>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u>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u>개인정보</u>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4. <u>기타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u>: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 헌마282, 425(병합) 결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 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비실명처리의 법적 근거(동일성 식별이 가능한 경우)

- 사람의 얼굴 등 신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 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특정인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가능한 경우 비실명처리 대상임
- 이 경우 비실명처리기준(예규) 제4조 제2항 제4호 중 "그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 가능 ⇨ 동 규정을 근거로 비실명처리 가능



■ 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비식별 처리의 필요성
 - 특정 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 등을 판결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비실명처리에 준하는 처리가 필요하지의 문제
- 비식별 처리에 관한 반론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권이 인정**되므로, 법률적 근거 없이 판결서의 일부를 편집하거나 삭제하여 제공하기 어려움 (☜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만을 규정)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음

■ 정리

- 동일성 식별이 가능한 사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개인정보보호조치 (비실명처리) 대상이 되고, 현행 비실명처리기준에 따라 비실명처리가 가능함
-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 등의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실 명처리의 문제는 아님. 이 경우는 무단 촬영된 신체 사진 등 불법사진을 판결서에 첨부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 또는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공개제한(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문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대검찰청은 레깅스 판결로 논란이 일자, 2019. 11.경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불법 사진을 첨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림 ⇨ 공소장(범죄일람표)에 불법사진이 첨부됨에 따라 판결서(별지 범죄일람표)에도 해당 사진이 그대로 첨부되는 경우는 향후 존재하기 어렵게 됨



V. 판결서 제공형태 - 내용 복사, 키워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여부

1. 문제점

- 판결문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및 이를 통한 정보의 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제 공되는 판결문을 편집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금태섭 의원 개정안(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제2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 에 관련 내용 포함됨
 -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¹⁴⁾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현재의 판결서 제공형태

-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판결서를 다운로드 할 경우 다운로드 된 파일은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됨(비실명화 검수시스템에서 이미지 PDF로 변환되어 제공)
-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므로 기계 판독이 불가 ⇒ 문서의 수정, 변환, 추출, 검색이 불가능
- 참고) PDF 유형별 기능
 - TEXT PDF
 - 키워드 검색, 텍스트 선택·복사·저장·인쇄 등 가능
 - 이미지 PDF
 - TEXT가 아닌 이미지이므로 위 TEXT PDF 기능 수행 불가

^{14) &}quot;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견해 대립

■ 개선이 필요 없다는 입장(현행 유지)

- 현행 법원 실무는 2019. 1. 1.부터 공개하는 모든 판결서에 임의어 검색 기능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선택한 판결서를 다운로드 할 경우 다운로드 된 파일은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것임 □ 학술 연구이용 등의 경우임의어 검색 기능만으로도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된 측면이 있음
- TEXT 형태로 제공될 경우 악용가능성
 - 이미지 제공의 경우보다 편집·수정이 월등히 용이해짐 ➡ 다운로드한 판결문을 편집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서 창출 등 악용가능성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문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고려하여야 함
- 빅데이터, 학술 연구이용 등의 필요성보다 판결문에 대한 신뢰, 안정성이 우선되어 야 함
- 금태섭 의원의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판결서를 다운로드한 경우 기계판독이 가능하 도록 허용한다면, 다수의 판결서를 다운받아 필요 시 검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을 수 있지만 해당 판결서의 편집·수정도 가능하게 되어 편집된 판결서가 악용될 수 있음"이라는 취지로 신중검토 의견 회신함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 재판준비나 학술연구이용을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판결문 제공이 필요하다는요청
-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로 판결문을 제공하여도 대형로펌 등에서는 파일을 TEXT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일변환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
- 적절한 데이터 학습을 통한 사례기반 인공지능이나 심층학습 기술의 발달을 위하여



판결문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이 강조됨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은 점차 판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므로, 같은 취지에 따라 TEXT PDF 형태로 제공하여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

4. TEXT PDF 제공 시 고려사항

- 1) 전환 대상 범위
 - 이미 생성된 이미지 PDF를 TEXT PDF로 재변환 시 많은 시간 소요됨
 - 2018년 기준 약 420만 건
 - 신규 생성되는 판결서부터 TEXT PDF 적용하는 방안 우선 고려할 필요
- 2) 시스템 적용에 대한 부분
 - 텍스트 PDF 제공 시스템 개발: 약 1,400만원 소요 예상, 구축기간 3개월 예상
 - 이미지 PDF 보다 약 3배 이상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저장 공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별첨]

비실명처리기꾼 예규 개정 연구반 활동계획

1. 연구반 구성배경

■ 비실명처리기준에 관한 외부의 비판

- 과도한 비실명처리로 판결의 가독성이 떨어져 판결서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 2016. 12. 행정자치부 발간의「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의하면 법 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법인명 등도 비실명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비판
- 이론적 검토와 실제 업무 현황, 법원도서관의 비실명처리 방식과의 비교, 시스템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결문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비실명처리기준 예규 개정 검토

2. 구성원

	소속	구성원	비고
팀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인수 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부팀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양석용 심의관	형사지원심의관
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김기수 사무관	비실명화 사업소
		김희정 법원주사	비실명화 사업소
	법원도서관	오준교 법원주사	자료편찬과
		김도형 법원주사	자료편찬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경재 사무관	형사지원심의관실
		이단비 사무관	형사지원심의관실
		이하정 사무관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이선순 사무관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3. 주요 검토주제

- 비실명처리 대상에 법인명 등의 포함 여부
- 그 밖의 비실명처리 대상 축소 가능성
 -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침해 우려가 없는 공인의 이름 등
- 비실명처리 방식 개선
 - 비실명화 사업소 시스템의 방식(A, B, C)과 법원도서관 방식(원고 1, 피고 1, 공소 외 등)에 관한 비교 및 개선가능성 검토
- 심급별 비실명처리 방식 검토
 - 심급별로 비실명처리를 하는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 시스템상 식별자 동일의 원칙¹⁵⁾ 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 판결문 별지의 비실명화 관련 검토
 - 별지가 상당한 대용량이거나 비실명처리가 곤란한 경우 대안 검토
- 4. 연구반 회의 진행 경과
 - 2020. 4. 21. 제1차 회의
 - 각 주제별 쟁점 정리 후 주무 검토자 지정
 - 2020. 5. 12. 제2차 회의
 - 주무 검토자의 검토내용 발표 후 추가 논의

^{15)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6조 (판결서 등의 심급별 비실명 처리 방식 등)

① 제1심판결서 등에서 이미 비실명 처리한 개인정보는 그 특정 비실명 표시가 항소심, 상고심 판결서 등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